

1. 개정이유

국방부 직제시행규칙 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에 따른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위임과 총액인건비제 정원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정책관 등)의 명칭 및 소관사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위임

나.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 후속조치로 총액인건비제 정원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

다. 2021년 국방부 소요정원 반영

1) 군인재해보상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및 담당인원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증원

2) 군소음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증원

3)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한시적
으로 증원

4) 국방부 소속기관(현충원)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증원

5)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상훈관리사)을 행정·기술직군 1명(7급
1명)으로 전환

라. 오기(오류)정정

1) 국방부 임무 분장 단어 오기 정정

1) 국방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 규정 오류 정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을 “직제 7조의 2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으로, “정보화기획관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하며,”로, “보좌”를 “보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관리관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계획예산관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화기획관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제7호 중 “대테러”를 “대테러”로 한다.

② 직제12조2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 대북정책관 · 국제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대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12조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정책관은 직제 제12조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대북정책관은 제12조3항제2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기획관 · 동원기획관”을 “직제 제13조2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 · 동원기획관”으로, “보건복지관은”을 “보건복지관으로 하며,”로, “보하되,”를 “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제2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7항을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기획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동원기획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건복지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29호의 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및 양성평등정책과를”을 “· 군인재해보상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를”로,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을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군인재해보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18항)제1호 중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을 “군인연금정책”으로, “제도발전”을 “제도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인재해보상연금제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②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인재해보상법」상의 급여여 관리
3.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및 재해 급여 심사
4.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
5. 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6. 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제11조제2항 중 “군수관리관”을 “직제 14조제2항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관리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직제 제14조3항제14호부터 31호까지 및 제3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전력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6항(중전의 제3항) 중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관리지원과·안전정책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환경과·군주거정책과·전력정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를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관리지원과·안전정책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환경과·군주거정책과·군소음보상팀·전력정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로, “안전정책팀장”을 “안전정책팀장 및 군소음보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제16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6항, 제19항 및 제2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5항)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소음보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2.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수립 및 운용
3. 소음·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4.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5.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6.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

7.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8.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0. 주민 보상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업무
11.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 및 운용, 결산,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9조제2항 중 “군구조개혁추진관”을 “직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구조개혁추진관·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하며, 군구조개혁추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직제 제2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직제 제28조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지 별표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69”를 “675”로 하고, 일반직 계 “661”을 “66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을 “208”로 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호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를 “161”로 하며,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을 “6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상훈관리사) 1”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0”을 “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2”를 “66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를 “36”으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7”을 “209”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를 “161”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을 “6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상훈관리사) 1”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를 각각 “75”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5의2에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	4명	2023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7 총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일반직 계를 다음과 같이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다음에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소음보상팀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소음보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달부터 국유재산환경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직제 7조의 2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u> --- <u>정보화기획관으로 하며, -</u> --- <u>보하고--.</u>
<u><신 설></u>	③ <u>기획관리관은 직제 제7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④ <u>계획예산관은 직제 제7조의2 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⑤ <u>정보화기획관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③ ~ ⑬ (생략)	⑥ ~ ⑱ (현행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책기획관 및 대북정책관은</u>	② <u>직제12조2항에 따라 국방정</u>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대북정책관·국제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대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12조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정책관은 직제 제12조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대북정책관은 제12조3항제2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방부의 <u>대테러</u>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 서와의 협조 8. 삭 제 9. ~ 11. (생 략) ⑤ ~ ⑰ (생 략)	7. ----- <u>대테러</u> ----- ----- ----- 9. ~ 11. (현행과 같음) ⑧ ~ ⑳ (현행 제5항부터 제17 항까지와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생 략) ② <u>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인사복지실) ① (현행과 같음) ② <u>직제 제13조2항에 따라 인사 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 보하 고 -----.</u> ③ <u>인사기획관은 직제 제13조제 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 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④ <u>동원기획관은 직제 제13조제 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u> ⑤ <u>보건복지관은 직제 제13조제 3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 29호의2 및 제30호부터 제33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u>

④ (생략)

⑤ ~ ⑦ (생략)

⑧ 삭제

⑨ ~ ⑰ (생략)

⑱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생략)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지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생략)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 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6. (생략)

<신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⑨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⑫ ~ ⑳ (현행 제9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1. 군인연금정책-----
----- 제도 발전

2. (현행과 같음)

3. 「군인연금법」-----

4. (현행과 같음)

5.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6. (현행과 같음)

㉔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지급여 관리

3. 군인재해보상심위원회의 운영

⑬ (생 략)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생 략)

②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및 재해 급여 심사

4.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

5. 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6. 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⑭ (현행 제19항과 같음)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제 14조제2항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

-----.

③ 군수관리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직제 제14

<신 설>

③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 기획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관리지원과 · 안전정책팀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관리과 · 부대건설사업과 · 국유재산환경과 · 군주거정책과 · 전력정책과 · 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되, 군수기획과장 · 물자관리과장 · 재난관리지원과장 · 시설기획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 건설관리과장 · 부대건설사업과장 · 국유재산환경과장 · 군주거정책과장 · 전력정책과장 ·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조3항제14호부터 31호까지 및 제3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전력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군수 기획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관리지원과 · 안전정책팀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관리과 · 부대건설사업과 · 국유재산환경과 · 군주거정책과 · 군소음보상팀 · 전력정책과 · 기반전력계획평가-----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안전정책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서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⑨ (생략)

⑪ ~ ⑭ (생략)

⑮ 국유재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소음 및 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1. ~ 13. (생략)

14.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의 수립 · 시행

⑮ (생략)

⑮ ~ ⑮ (생략)

⑳ · ㉑ 삭제

<신설>

----- 안전정책팀장 및 군소음 보상팀장-----

⑦ ~ ⑮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⑮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⑮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⑮ (현행 제16항과 같음)

⑮ ~ ⑮ (현행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와 같음)

⑮ 군소음보상팀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2.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수립 및 운용
3. 소음·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4.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5.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6.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
7.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8.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0. 주민 보상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1.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 및 운용, 결산,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제19조(국방개혁실) ① (생략)

②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 ⑤ (생략)

⑥ 삭제

⑦ ~ ⑨ (생략)

협정(SOFA)에 따른 소음저감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9조(국방개혁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구조개혁추진관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하며, 군구조개혁추진관-----

-----.

③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직제 제2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직제 제28조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21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제21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 4년 3월 31일까지 별표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9	675	+6
일반직 계	661	667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	37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52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	208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 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호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	161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	64	+1
· · <u>전문경력관</u> <u>나군(상훈관리사)</u> ·	· · 1 ·	· · <삭 제> ·	-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0	676	+6
일반직 계	662	668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	36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52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7	209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 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호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	161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	64	+1
· · <u>전문경력관</u> <u>나군(상훈관리사)</u> ·	· · 1 ·	· · <삭 제> ·	-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74</u>	• <u>75</u>	+1
일반직 계	<u>74</u>	<u>75</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2</u>	<u>13</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3.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u> <u>(준속기한:2024년 3월 31일)</u>	<u><신 설></u>	2	+ 2
총계		<u>2</u>	
일반직 계		<u>2</u>	
5급 이하		<u>2</u>	